

## 2021년(상반기)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우리는 청탁금지제도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합니다.

### □ 상담 17건

연번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
1	○○○○○○○○에서 평소 노고가 많은 소방공무원들에게 오렌지주스 2만개(약 2천만원 상당)를 기증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 예외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li> <li>○ 그러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li> </ul>	

연번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
		<p>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어 가액범위라 하더라도 직접적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수수가 금지되며, 직접적 직무관련자라 함은 인·허가관련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상, 수사·감사·감독·검사·시험·단속·행정지도등의 직접적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절차진행이나 계약진행중인 대상, 정책·사업 등의 결정이나 집행으로 이익이나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상 등을 말합니다.</p> <p>사안의 경우, 주어진 정보가 제한되어 판단의 한계가 있지만 ○○○○○○○○의 구성원들을 보면 소방 직무 관련 업체들도 포함되어 있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p> <p>○ 참고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접수하는 방안을 권장하오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p>	
2	<p>○○○○○○○○○○에서 소방관 동상(약270만원상당)을 소방 본부에 기증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p>	<p>○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 예외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p>	

연번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중 제8조제3항8호 그 밖의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조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접수하는 방안을 권장하오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li> </ul>	
3	<p>○○○○○○○○○○에서 ○○○○ 인사발령에 따라 본부장에게 축하난 등 보내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 예외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li> <li>○ 그러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여부를 판단하여야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직무</li> </ul>	

연번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
		<p>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어 가액범위라 하더라도 직접적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수수가 금지되며, 직접적 직무관련자라 함은 인·허가관련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상, 수사·감사·감독·검사·시험·단속·행정지도등의 직접적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절차진행이나 계약진행중인 대상, 정책·사업 등의 결정이나 집행으로 이익이나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상 등을 말합니다. 사안의 경우, 주어진 정보가 제한되어 판단의 한계가 있지만 ○○○○○○○○ 직무 관련성이 있어 보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p>	
4	<p>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떡을 구매해서 ○○○○○○○○에 보내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p>	<p>○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 예외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p>	

연번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여부를 판단하여야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5	<p>○○○○○○공모를 통해 20명 선발로 주부, 학생 등 포함) 위촉 시 기자활동에 필요한 노트, 가방, 볼펜, 가방 등 기존 3만원 범위로 지급하였는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및 물품 지급 상향 범위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는 동법 제1조에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데, 동법 제2조에 의해 공직자 등이란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 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공직자등의 배우자/공무수행사인/일반국민(제공자)등이 해당됩니다.</li> <li>○ ○○○○○은 주부, 학생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반국민(받는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에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공무원의 경우 직무관련연관성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li> </ul>	
6	<p>○○○○○○이 모르는 사람으로 부터 축하난을 선물 받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li> </ul>	

연번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
		<p>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1회에 1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금품수수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신고대상은 아닙니다.</p>	
7	<p>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소속 상근직원에게 주는 설명절 선물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제8조제3항제1호 공공기관이 소속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li> <li>○ 예산편성기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맞게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li> </ul>	
8	<p>소방관 대상으로 개인병원(준종합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무료로 해준다고 제안을 하였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제8조제3항제8호에 의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가능하나</li> <li>○ 이 경우, 일반인, 모든 공직자 등에 무료</li> </ul>	

연번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
		<p>일 경우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 공직자를 대상만으로 무료로 해주는 경우는 혜택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p>	
9	<p>옛날에 같이 일했던 업체 대표로 부터 사과 한박스를 설명절 선물로 받고 바로 반환하였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 예외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한시적 2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li> <li>○ 그러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여부를 판단하여야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연번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
10	소방관 대상으로 개인병원(준종합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무료로 해준다고 제안을 하였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제8조제3항제8호에 의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가능하나</li> <li>○ 이 경우, 일반인, 모든 공직자 등에 무료일 경우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 공직자를 대상만으로 무료로 해주는 경우는 혜택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li> </ul>	
11	여러 기관 공동주최(후원 포함)로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하는데 일반참여자에게 시상금을 줄때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는 동법 제1조에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데, 동법 제2조에 의해 공직자 등이란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일반국민(제공자)등이 해당됩니다.</li> <li>○ 일반국민(받는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공무원의 경우 직무관련 연관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li> <li>○ 참고로, 후원 등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접수하는 방안을 권장하오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li> </ul>	

연번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
12	<p>○○○○○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시는 공무원, 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떡을 500인분 기증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위촉되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 예외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li> <li>○ 그러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p>아울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어 가액범위라 하더라도 직접적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수수가 금지되며, 직접적 직무관련자라함은 인·허가관련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상, 수사·감사·</p>	

연번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
		<p>감독·검사·시험·단속·행정지도등의 직접적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절차진행이나 계약 진행 중인 대상, 정책·사업등의 결정이나 집행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상등을 말합니다.</p> <p>○ 참고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부심사위원회를거쳐 접수 하는 방안을 권장하오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p>	
13	<p>○○○○에서 현장활동으로 고생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허리보호를 위해 물품을 기증하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새제품은 200개정도가 가능하고 리퍼제품은 200개 이상 더 많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바로 기증 받을수 있는지요?</p> <p>혹시 새제품이 아닌 리퍼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증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p> <p>○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법제8조제1항,제2항)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p> <p>○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규정하고 있고 사안에서 해당기업체가 제공하는 금품 등이 『기부금품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p>	
14	<p>○○○○ 산하기관의 평가 위원으로 온나라 화상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신고대상인지요?</p>	<p>○ ○○○○ 산하기관에서 요청하였으며, 사례금을 받는 평가회의에 해당되어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연번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
15	○○○○ 공모사업의 심사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인지와 복무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사례금을 받고 심사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시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되며,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출장 그 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개인연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6	○○주관으로 청년인턴십 선발위원이 되어 서류심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요? 심의는 서면으로 실시됩니다.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강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형태에도 해당하지 않는 서면심사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7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을 유선으로 요청 받았습니다. 현재 업무와는 관계가 없으며 근무시간외에 실시되는 강의인데 신고대상인지요?	○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합니다. 이에 해당된다면 근무시간 내·외 여부 상관없이 신고대상에 해당되며 공문을 통해 강의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1건

연번	신고내용	조치사항	비고
1	과거 업무 관계로 알게 된 자에게 설 명절 선물을 받고 신고함	<p>우선, 제공자와 수수자의 직무연관성을 검토 후 판단할 사안이나, 추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환하도록 상담하였음</p> <p>「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공자와 수수자의 관계는 직접적 직무관련자로 보기 어려워 가액 범위의 선물은 같은 법 제8호제4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로 볼 수 있어 법에 저촉되지 않음.</p> <p>그럼에도 수수자는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와 상담을 하였고 향후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체 없이 반환하는 등 모범적으로 대응함.</p> <p>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종결처리 등)제1항제6호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종결 처리함</p>	-